

2022. 6. 9.

남구 이야기

별호
2022-17호

발행인 : 남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발행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소 :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남구이야기 별호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 입법예고

제2022-736호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2022-748호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43

○ 공 고

제2022-730호 광주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51

제2022-735호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운영 공고 55

제2022-742호 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공고 57

제2022-743호 「백은광장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3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 61

제2022-746호 2022년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76

제2022-754호 제3기 「남구톡톡」 SNS기자단 모집 공고 85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2-736호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및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안 제6조제1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건당 10억 이상 및 1건당 취득 1천㎡, 처분 2천㎡ 이상인 재산) 규정(안 제11조제1항)
 - ※ 다만, 시행일을 상위법령의 해당 규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3. 1.1.로 지정
- 당해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부 감액조정(안 제33조)
-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 납기를 현행 연3~4회에서 연6회의 범위 내 분할 납부 가능토록 개정(안 제34조제2항)
- 상위 근거조항 및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27조제4항제2호, 제40조)

○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건물대부료 계산 기준 신설(안 제30조제3항)

○ 조례 위임 규정 신설·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31조)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대부) 받은 행정(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구체화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조례 제46조 별표의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용어 정비(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참조: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607-3021) 및 팩스(☎ 607-300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회계과

- 팩스 : 062) 607 - 3005

붙임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산관리 총괄자”를 “총괄재산관리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92조에 따라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제1항 중 “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수익허”를 각각 “사용허”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를 각각 “사용허”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을 “사용허가부를”로, “사용·수익허가부는”을 “사용허가부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받”을 “사용허가 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경쟁 입찰”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23조,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40 이상”을 “40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 이상”을 “25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10 이상”을 “10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초·중등교육법」 제3조”를 “ 「초·중등교육법」 제3조”로,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을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를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거래시가를 말하며”를 “말하며”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건물대부료 계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로, “산출(이하 같다)하여”를 “계산하여”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하고,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

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를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17조제6항제1호(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사용료의 100분의 30퍼센트

3. 영 제17조제6항제3호(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 : 사용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퍼센트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한다.

제3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2조의 제목“(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수익허”를 “사용허”로,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그 전부를 감액조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대부료 등의 납기))”를 “(대부료 등의 납기)”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를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0조 전단 중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을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 상당액으”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 상당액으”를 “5퍼센트”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자치구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원
자치구 본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청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명		설계기준					비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m ² ×사용인원	
	4~2.4m ² /인	26~1.5m ² /인	2~1.2m ² /인	1.6~1m ² /인	1.2~0.9m ² /인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0.43m ² / 인	100명~200명 0.40m ² / 인	200명 이상 0.33m ²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²) × 대수					
식당		1.63m ²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m ²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m ²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² ~0.2m ²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² / 인	11.52m ² / 인	8.64m ² / 인				
자료실		(0.3~0.4m ²) × 공무원수					
창고		0.72m ² /인 ~ 0.85m ² /인					
전산실		9.79m ²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40%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설>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른 -----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재산관리관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사용허가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사용허

②

사용허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

6. 사용허

7.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사용허가부를

사용허가부

는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허가 받-----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13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

⑤ 일반경쟁 입찰-----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가-----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32조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
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
과 같음)

② -- 각 호-----

----- 40이상-----.

1.·2. (현행과 같음)

③ -----

----- 25이상-----.

1.·2. (현행과 같음)

3.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2호-----
----- 10
이상-----.

4. 「초·중등교육법」 제3조---
----- 「평생교육
법」 제31조제2항-----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6. (생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원석시가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④ ----- 재산-----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 -----

3. ~ 6.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말하며 -----

감정평가법인등이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인등-----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

----- 계산-----

-----.

② -----

-----.

----- 계산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계산하여 -----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하고,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frac{\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frac{\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7조제6항제1호(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사용료의 100분의 30퍼센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
명 이상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
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
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
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
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
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
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
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
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

<신 설>

3. 영 제17조제6항제3호(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

<신 설>

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
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
당 : 사용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퍼
센트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
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
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
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
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
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

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

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

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

법 시행령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한다.

1. (생략)
2.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본항 신설 2008. 5. 13]

<신 설>

<신 설>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④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

는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허가 및 대부) ① -----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
허가-----

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
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
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
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
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
여야 한다.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사용허-----

---- 그 전부를 감액조정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
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④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및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구
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

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 8. (생략)

②·③ 삭제

④ ~ ⑥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의 재산

2. ~ 4. (생략)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

5.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2.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

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 2.·3. (생 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

2.·3. (현행과 같음)

4. -----

-----.

-----.

5.·6. (생략)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
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
업감독규정」 제4조에 따른 부
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
만원의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
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
다.

가.·나. (생략)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
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5.·6. (현행과 같음)

제40조(신탁의 종류) -----

-----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
혼합형 -----

----- .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

1. -----

----- 10퍼센트-----

가.·나. (현행과 같음)

2. -----

----- 5퍼센트-----
----- .

[참고]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시행일: 2023. 1. 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6. 7.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규칙명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평가기준에 추가하여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3. 주요내용

- 가. 부패영향평가 평가 대상 제외 자치법규 내용 구체화(안 제3조)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 나.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별표)
 - 평가기준 : 11개 → 12개 추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7층 감사담당관(우)61687)
- 전화 : 062-607-2212
- 팩스 : 062-607-2250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감사담당관(062-607-2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패유발 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를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의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u>부패유발 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p>	<p>제3조(평가대상) ----- --. ---- <u>기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u> -- <u>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u></p>

[참고자료]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 의 용이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경관과 광고물 등과의 조화 및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모집인원 : 3명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응모자격 ※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역할
○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광주광역시남구광고물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심의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6. 모집기간 : 2022. 6. 2. ~ 6. 17.(15일)

7.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접수처 : 남구청 8층 도시계획과(☎ 062-607-3934)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봉선동), 남구청 8층 도시계획과

8. 선정발표 : 2022. 6. 20.(월) / 선정된 분에 한해 개별 통지

9. 기타 :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 지급

10. 문의처 : 남구청 도시계획과 (☎ 062-607-3934)

※ 상기일정은 규정 주요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광주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광주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남구청 공고 제2022 - 735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산 립 청 장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6. 2.(목) ~ 6. 19.(일) / 18일간

나. 사유 :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봄철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산불방지대책본부(공원녹지과) : 062-607-3843
-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공고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해 입양 활성화 유도 및 보호여건을 개선하고자 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신청기한 : 2022. 1. 1.(토)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거주지가 남구로 되어 있고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남구 주민
- 입양자 주소지가 광주광역시가 아닐 경우 해당 유기동물 포획 구청에서 지급
※ 중복지급 불가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 입양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최대 25만원(두) 지급이며,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준비서류: 분양확인서(동물보호소에서 발급), 입양비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 세부내역영수증(붙임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남구청 지역경제과(☎062-607-2754)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6층 지역경제과

붙임 1. 청구서 1부.

2. 분양확인서 및 세부내역영수증 양식 1부.

청 구 서(개인용)

- 건 명 : 유기동물 입양

- 청구금액 : ₩ (금 원)
 - 처리비용 250,000원내 100% 지원

- 지급기한 : 202 년 월 일까지

- 지참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입금통장사본, ③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붙임서식 2의 세부내역 영수증, ④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⑤ 동물등록증 사본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입금내용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2 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세부내역 영수증

동물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	-	(핸드폰: - -)						
동물 정보	종류		품종		성별		연령		모색	
	동물등록 번호									

진료 또는 미용 내역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업소에서 작성)	영수증 (원본 첨부)
<p>○ 일 자 :</p> <p>○ 진료내용 / 미용내용</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p>○ 동물병원 / 동물미용업 내역(서명란)</p> <p style="margin-left: 20px;">- 00 동물병원 수의사 000 서명</p> <p style="margin-left: 20px;">- 00 동물미용업 000 서명</p> <p>※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업소에서는 소유자 및 동물 정보가 올바른 지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영수증 붙이는 곳</p>

-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비만 해당
- ※ 세부내역영수증 내역(날짜, 내역, 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서명(수의사, 미용업자) 생략가능
- ※ 세부내역영수증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서명란(수의사, 미용업자) 기입 필요

* 영수증마다 1장씩 작성

「백운광장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3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도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백운광장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3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7.

남 구 청 장

1. 사업목적

- 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 나. 도시재생사업과 실질적인 연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 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시재생 홍보 및 주민(조직)발굴
 - 라.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도시재생 활동가 발굴
- ※ 주민공모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2. 사업지역 :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역내



3. 제안자격 : 3~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또는 남구에 소재한 단체

- 주민 : 대상지역(백운2동, 봉선1동, 주월1동) 내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과반수 포함
- 단체 : 남구 내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관련 단체 등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 다수의 직계가족은 1인으로 보고, 대표제안자는 대상지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및 사업 >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상급 단체로부터 지원계획이 있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일회성 캠페인, 동호회모임, 친목회, 향우회, 관광성 사업 등)
-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속사업인 경우)
- ☑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4. 추진기간 : 2022년 7월 ~ 12월(6개월)

5. 공모분야 : 백운광장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주제 공모(5개팀)	자유 공모(5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운광장 푸드존 및 백양로 활성화에 대한 기획 및 홍보 - 푸드존 및 주변 상인 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형성 등 방안 도출 - 골목길 및 노후 공간 환경 개선 및 쓰레기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극복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를 위한 나눔밥상, 소외이웃 대상 반찬 나눔 행사, 친환경 에코 제품 제작 나눔 등 • 뉴딜사업 홍보 및 마을 브랜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영상 아카이빙, 마을 특화 제품 개발 및 제작, 마을 콘텐츠 발굴 • 문화 예술 교육 및 소규모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패션·음악·요리·바리스타교육 등 - 북콘서트, 음악회, 연극공연 등

※ 단, 상황에 따라 지정주제 공모 수는 분야별로 조율할 수 있음.

※ 1주체 1사업 원칙으로 2개 이상의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주민공모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외부에 사업을 의뢰하여 수행하는 방식은 참여 불가

6. 지원금액 : 75백만원(팀별 5, 10백만원 이내)

7. 신청개요

가. 접수기간 : 2022. 7. 1.(금) ~ 7. 5.(화) 18:00

나. 접수처 : 백운광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방문), 남구청 도시재생과(우편)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주민참여차
서명부 1부, 기타 참고자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각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gu.gwangju.kr/>) 메인 고사공고 → 서식 다운로드

라.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백운광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남구 서문대로 831, 9층)

- 우편접수 : (도착일 기준)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8층 도시재생과

8.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일정 : 2022. 7월중(예정)

나. 심사추진 :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다.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에 적합한 사업

- 사업의 공익성 : 추진주체의 적정성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사업의 실현성 : 사업일정, 장소, 사업비, 참여주민을 고려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 주민의 의지와 욕구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라. 결과통보 : 2022. 7월중 선정단체 개별통지

9. 공모사업 추진일정

공고/홍보	접수	심사.선정	사업시행	정산.환류
✓ 사업공고/홍보 (홈페이지 등)	✓ 사업계획서 등 접수 ✓ (방문.우편)	✓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액 확정 (1차 심사-심사위원회 ✓ 최종심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단체별 사업 시행 및 중간 점검	✓ 사업정산 및 피드백 실시
'22.6.7.~6.30.	'22.7.1.~7.5.	'22.7월말限	'22.8 ~ 12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신청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별도 개설(예금주명은 법인명 또는 대표자+단체명 명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 시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및 e-나라도움사용
-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조치 및 5년간 교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운광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62-674-9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모사업 지원 안내 >

- 지원처 : 백운광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062-674-9923)
- 지원기간 : 공고 후 사업기간 내 수시 컨설팅 지원
- 지원사항
 -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공모사업 제출서류) 작성요령
 - 보조금 집행 요령 및 e-나라도움 사용 방법 등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발급·사용

□ **관련법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발급

- 통장 및 카드는 보조사업 사업별로 구분하여 발급
(“A”단체가 3개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3개의 통장 및 3개의 카드 발급)
- 법인은 법인단체 명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개인카드) 개설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 보조금 전용계좌, e-나라도움 전용신용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발급필요

=> 발급에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

□ 카드 사용요령

- 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사용대상

구 분	사 용 대 상	세 부 내 용
카드 사용	소모성 경비	물품 구입비, 식대, 교통비 등
계 좌 이 체	인건비성 경비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편성·집행불가 항목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기부금, 시상품 구입비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회원,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공과금, 전화요금, 상근인건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동산·부동산,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벤트성 행사경비

국고보조금사업 비목·세목별 예산편성(집행)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구성내역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기타인건비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용품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재료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소모성 물품구입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내구연한 1년이상 사용가능한 자산성 물품은 편성불가) 5. 각종 회의비(회의 자료준비, 식대, 다과 등), 전문가 활용비 6.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7.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임차료 (0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기타운영비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기타 제경비

※ 위 표는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을 발췌한 것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야함

보조금사업 비목별 집행방법

예산비목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신용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을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청중, 단체 내부회원, 직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단체 및 지부 임직원, 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이 원칙 ○ 강사료가 건당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원거리(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에 한하여 교통비 추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철도, 해운 왕복운임에 한함 	
단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8시간 이내(특정인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불가) ○ 별도 교통비 및 급식비 편성 불가 ○ 대표제안자, 단체 내부회원,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인건비는 자의적으로 편성불가하며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인건비 이체에 따른 이체수수료 납부 	
원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청)인쇄기준으로 하고 표준규격(10절, 16절)으로 레자크 기의 표지와 재생지 또는 중질지의 재질에 양면인쇄 및 단색인쇄 원칙 	
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식 8,000원(간식비 1인 1식 4,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나 회의시 식비나 다과비는 편성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지출시 참석자 서명부 필수, 회의시 식비·다과비 동시 지출 불가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영수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은 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신청단체	단체명				
	대표자	직명 : 성명 :	등록사항	등록부서 : 등록일 :	
	홈페이지		연락처		
	소재지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활동) 개요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보조금+자부담)	자부담	천원(%)	
담당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휴대전화 : ○ E-mail :				
최근3년 區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주민참여자 서명부 각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기 구 표	
당해년도 예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기타(%)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최근2년간 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p>※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p>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p>※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p>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서식 4]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비 고
	100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			○ ○	무통장입금 보조금전용카드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 ⑤ 유의사항 : 법령에 명시적 근거없이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2년 백운광장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는 '2022년 백운광장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 신청서류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모니터링, 평가 등 활용	5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모사업 선정에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정보제공주체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2022년 백운광장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022년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에 의거 2022년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수상후보자 자격

- 남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으로서
 - 공고일('22.6. 7.)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거주한 사람
 -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지 않은 사람

2. 수상후보자 추천부문

- ① 사회·봉사 부문
 -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 등 불우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화합과 협동에 크게 기여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 ② 효행 부문
 -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거나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본보기가 된 사람
 - 윤리·예의, 도덕에 표상이 되는 사람
- ③ 문화·예술·체육 부문
 -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예술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사람 등
- ④ 지역사회발전 부문
 -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남구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 기업 및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화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 ⑤ 교육 부문
 - 문화교육특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수상후보자 추천

- 기 간 : 6. 7. ~ 7. 18.(42일간)
- 추천권자
 -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 지역 주민 30명 이상 연대 추천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이상 소정양식)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명함판사진(3.5Cm×4.5Cm) 1매(이력서에 부착)
 - 기타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6. 7.(화) ~ 7. 18.(월)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서식 : 남구청 자치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접수처 : 남구청 자치행정과(☎ 607-3771)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우61687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자치행정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 8. 10.(예정) - 개별통지

6. 시상 내용

- 시상시기 : 개청 27주년 남구민의 날 기념식(날짜 미정)
- 시상인원 : 부문별 각 1명(심사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시상 제외)
- 시상내용 : 남구민상 상패 수여

7.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저작권과 관련된 작품은 반환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행정과(☎607-3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추천부문				
인 적 사 향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 추천사유 :

위의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와 같이 상기부문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2022년 도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첨 부 :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명함판 사진 부착).
3. 공적증빙자료 1부.

2022년 월 일

추천자 :

인

주 소 :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귀하

공 적 조 서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 도로명 주소 표기		
④ 직 업		⑤ 소 속(직장명)	
⑥ 직 위		⑦ 추 천 훈 격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⑧ 공 적 분 야	_____부	⑨ 공 적 기 간	
⑩ 공적요지(70자 이내)			
<p>※ 조사자 : 업무 소관 담당 추천관 : 실·과 - 실·과장, 직속기관 - 기관장·소장, 동 - 동장 기관단체 - 기관단체장</p>			
조 사 자			
⑪ 소 속			
⑫ 직위(직급·계급)		⑬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⑭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⑮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⑯공 적 내 용	

⑩공 적 내 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개인정보의 취급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2022년 남구민상 수상자 선정

나. 개인정보 수집항목 : 추천서, 공적조서(관련 증빙자료), 이력서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항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제공자 : 심사위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결격사유조회, 성
년후견등기 여부 조회, 선정심의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심사자료

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완료 및 조회
결과 송부 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2.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제3기 「남구톡톡」 SNS 기자단 모집

남구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생생한 구정정보 제공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홍보추진을 위하여 제3기 「남구톡톡」 SNS
기자단을 모집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 6. 8.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22. 6. 8. ~ 6. 17. 24:00 [10일간]

2. 모집인원 : 15명 내외

3. 활동기간 : 2022. 7. 16. ~ 2023. 6. 30.

4. 활동내용

가. 남구 축제·행사 및 남구의 명소, 주요기관 등을 취재 후 개인 SNS 게시

※ 개인별 기사 월 2건 이상 게시 의무

나. 남구 공식 블로그 및 SNS 모니터링(좋아요, 댓글, 공유 등) 참여

다. 주요 구정 정보 온·오프라인 확산

5.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광주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를 다니는 자

나. 남구에 애정이 있고 SNS 계정이 있는 자

다. 사진·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자

라.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6. 활동지원

가. 원고료 지급 ※ 1인당 총 지급 상한액 10만원

구분		지급 조건	보상금(원)	비고
블로그 분야	단순기사	· 사진 5장 이상 / 500자 이상	10,000	기본 상한액 8만원
	단순기사 (남구주관)	· 사진 5장 이상 / 500자 이상	15,000	
	미션취재	· 사진 10장 이상 / 500자 이상 / 미션관련 구체적 내용 (구체적 취재활동 확인 및 기획기사 인정 시)	30,000	
SNS 분야	단순기사	· 사진 5장 이상(가볼만한 곳, 맛집, 문화재, 축제, 행사 등) · 지정태그 포함 : 광주남구청, 남구톡톡SNS기자단 · 30~70자 이상	5,000	
영상 분야	단순영상	· 재생시간 60초 내외 / 자막 처리 · 사진이미지만 나오는 영상 · 지정태그 포함 : 광주남구청, 남구톡톡SNS기자단	15,000	
		· 재생시간 2~3분 내외 / 자막 처리(200자 이상) · 지정태그 포함 : 광주남구청, 남구톡톡SNS기자단	30,000	
	미션영상	· 재생시간 2~3분 내외 · 미션관련 구체적 내용 포함 · 지정태그 포함 : 광주남구청, 남구톡톡SNS기자단	50,000	
콘텐츠 확산	공유 (월 최대 20건)	· 남구 공식 SNS 게시글을 개인 SNS에 공유	500	기본 활동
	댓글	· 남구 공식 SNS 게시글에 댓글 작성	기본 활동	
기사 채택	· 남구 공식 블로그·SNS 또는 구보에 채택 및 게재될 경우 (미션취재 포함)		10,000	추가 지급
	· 영상 분야 채택 시(미션영상 포함)		20,000	
불인정	· 남구 관외 지역, 기업 또는 광주광역시청 주관행사, 정치적 주제 포스팅 시 · 단순 공유글 제외 - 예)블로그 포스팅 후 해당글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포스팅			

나. 청년활동 포인트 추가 부여(남구 거주 또는 생활하는 만 19~45세 청년)

다. 우수 기자 선발 표창(연 2회)

7.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자 계정 확인을 위해 계정주소 등 필수 기입

8. 신청방법

가. 이메일 접수 : lover2179@korea.kr

나.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남구청 7층 홍보담당관 미디어팀

9. 선정기준 ※ 평가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60점 이상) 순으로 선발

- 가. 개인 SNS 계정 보유 및 활성화 여부
- 나. 콘텐츠 제작 역량
- 다. 거주지 / 학교 · 직장 소재지

10. 선정발표 : 2022. 6. 30.(목) / 개별통지

11. 기타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촬영 사진 등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채택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남구와 제작자의 공동소유로 합니다.
- 라. 기자 해촉 사유에 해당 시 해촉할 수 있습니다.
 - ※ 기자 해촉 사유
 -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기타 남구 SNS 기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팀(062-607-3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일정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지원 신청서

제3기 「남구톡톡」 SNS 기자단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남/여)	
연 락 처		이메일		
직 업 (직 장 명)	※ 학생인 경우 학교, 전공, 학년, 직장인 경우 회사명, 업무 등			사 진 (최근사진 파일첨부)
주 소				
SNS 활동사항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SNS 주소(URL) 기재		친구수 (팔로워, 구 독 자 등)	
편집프로그램 활용 여부	사진 편집 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영상 편집 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주요 활동 경력 (타기관 활동경력 등)	※ 년 월 ~ 년 월		※ 활동 세부 내역	
사진·영상 관련 자격증	※ 이미지 및 영상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 및 활동포부	※ 지원동기나 과거 관련 직종 종사 이력, 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재 ※ 본인이 작성한 자랑할만한 SNS 우수 콘텐츠 URL 등 링크			
광주광역시 남구 제3기 「남구톡톡」 SNS 기자단에 지원합니다.				
2022년 6월 일				
			신청인	(서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 남구는 남구톡톡 SNS기자단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SNS 기자단 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남구톡톡 SNS기자단 선발 및 운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직업(직장명), 주소
 - 선발확정시 원고료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남구 SNS 기자단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 기자단으로 선발되지 못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구톡톡 SNS기자단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6월 일

신청인 : (서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귀하